#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5

제출일자 : 2003. 1.16

제출자:사천시장

## 1. 제안이유

○ 읍면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(주민자치과)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골자

○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. 12. 31에서 2004. 6. 30 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함.

# 3. 법적근거

-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 연장승인
  - [경남도 행정 13101 12463 (2002. 12. 4)]

# 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#### 사천시 조례 제 호

#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조례 제493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- ② (한시기구) 제7조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조례 제493호 사천시행정기구설 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제2조(다른 법규의 개정)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제2호중 "총무국, 120기동대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"를 "총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"로 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 칙(제493호)	부 칙(제493호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(유효기간) 제7조중 주민자치과는	② (한시기구) 제7조중 주민자치과의 존속
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	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진다	
	н ы
<u>&lt;신 설&gt;</u>	<u> </u>
	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
	하되, 조례 제493호 사천시행정기구설
	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은 2003
	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	제2조(다른 법규의 개정) 사천시의회위
	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	<u>제3조제2항제2호중 "총무국</u> , <u>120기동대, 체육</u>
	시설관리사업소"를 "총무국, 체육시설관
	리사업소,"로 한다.